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[별지 제15호서식] <개정 2017. 9. 19.>

동의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동의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 일자
동의자	성명(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
	주소	전화번호

동의내용		
	제안 면적	(㎡)
	사업방식	
	제안자 (시행예정자)	성명: 법인번호(생년월일) :

동의자 소유 토지(지상권) 현황

번호	지번	지목	면적(㎡)	지상권 설정 여부
1				
2				
3				

본인은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3조제3항에 따른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(주민열람,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제안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)에 대하여 제안자 등에게 설명을 듣고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동의자 (서명 또는 인)

(00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자) 귀하

첨부서류	1. 동의자가 개인인 경우: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유식별정보를 제외한 성명·생년월일만 포함된 서류를 말한다) 사본 1부 2. 동의자가 법인인 경우: 법인인감증명서

유의사항

1. 제안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조건에서 제안자가 변경되어도 본 동의는 유효합니다.
2. 소유(지상권 설정) 토지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(間印)을 하여야 합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